

의안번호	제610호
의결 연월일	2024년 6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제안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24년 6월 10일

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10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4년 6월 10일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포상대상자 결정 시 공적심사 임의생략 규정을 삭제하고, 포상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포상의 적격성과 영예성을 제고하고
- 자격미달자에 대한 포상 제한과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받은 자에 대한 포상취소 및 부상환수 규정 신설을 통해 포상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하고자 함

※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(충청북도 감사관-8505호)

2. 주요내용

- 포상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포상 대상자 결정 시 공적심사를 임의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삭제(안 제9조)
- 포상에 부적절한 자에 대한 포상 제한 조항 신설(안 제11조)
-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 받은 자에 대한 포상 취소 조항 신설(안 제12조)

3. 조례안(개정조례안)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- 조례안예고 : “제출의견 없음”
 - '24. 6. 4.(화) ~ 6. 9.(일) / 충청북도의회 홈페이지
- 관련부서 협의 : 해당없음
-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포상대상)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충청북도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충청북도의회의원, 공무원, 충청북도민(외국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단체에 행한다. 다만, 필요한 때에는 충청북도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.

제3조(포상권자) 포상은 충청북도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행한다.

제4조(포상의 종류) ① 포상은 표창장, 감사장, 상장,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으로 제작하여 수여한다.

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상금, 상패,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.

제5조(표창장)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.

1. 의정발전과 의회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
2.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경우
3.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

제6조(감사장) 감사장은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.

제7조(상장)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.

1. 각종 품평회, 경진회,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
2. 학술, 예술, 체육,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
3.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

제8조(모범공무원 포상) 모범공무원 포상은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 의회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한다.

제9조(포상절차)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추천은 담당관, 전문위원, 상임 위원장, 기관·단체가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이 제1항에 따른 포상을 시행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④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 제2항에 따른 공적조서 제출 및 제3항의 공적 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10조(공적심사위원회)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의회공적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의회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각 담당관 및 의회운영전문 위원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총무팀장이 된다.

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총무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

④ 공적심사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.

제11조(포상금지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. 다만, 상장의 경우는 제외한다.

1.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고 「지방공무원 인사기록·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2. 재직 중 불문경고처분을 받고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」 제93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3. 「지방공무원 징계규칙」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주요 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
4.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
5.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
6. 공무원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자(모범공무원 포상의 경우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). 다만, 공적이 현저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대상자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7. 성범죄,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
8. 그 밖에 의장이 포상계획에 포상금지 대상으로 정한 자

제12조(포상취소) 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
 2.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
 3.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·제출한 경우
- ② 포상 추천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포상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하며, 포상권자는 추천권자의 요청이 없는 때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상장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

④ 포상이 취소된 자는 포상 및 이와 관련하여 받은 패와 부상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추천권자는 포상권자가 포상 등을 원활히 환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3조(포상시기)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.

제14조(이중 포상금지)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.

제15조(포상대장의 등재)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.

제16조(포상의 수여증명서 발급) ① 포상은 재발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포상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포상의 수여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의 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 [별지 제1호서식]

제 호	
	표 창 장
	주소 또는 소속 : 직 성 명:
(표 창 문)	
	년 월 일
	충청북도의회의장 ○ ○ ○ (직인)

■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 [별지 제2호서식]

제 호	
	감 사 장
	주소 또는 소속 : 직 성 명:
(감 사 문)	
	년 월 일
	충청북도의회의장 ○ ○ ○ (직인)

■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[별지 제3호서식]

제 호	
	상 장
	주소 또는 소속 : 직 성 명:
(상 장 문)	
	년 월 일
	충청북도의회의장 ○ ○ ○ (직인)

공 적 조 서

(1)성 명			(한 자)	
(2)생년월일			(3)군번 (군인의 경우)	
(4)성 별			(5)국적 (외국인의 경우)	
(6)주 소				
(7)직 업			(8)소 속	
(9)직 급		(10)직 위		(11)대외직명*
(12)근무기간			(13)공적분야	
(14)공적요지(50자 내외)				
(15) 추천훈격			(16) 추천순위	
조 사 자				
(17)소 속			(18)직 위	
(19)직 급			(20)성 명	
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				
년 월 일				
추 천 관			(인)	

주요 학 력 및 경 력			
(21) 년 월 일	(22) 이 력	(23) 년 월 일	(24) 이 력
과거 표창기록 (훈장 · 포장 · 표창별로 기록)			
(25) 년 월 일	(26) 내 용	(27) 년 월 일	(28) 내 용
(29) 공 적 사 항			

포 상 대 장

호 수	포년 월 상일	포상 종별	포상 기관	피 포 상 자					포상을 하계된 공적요	기념 또부 품는 상	참 고
				직 또 직	위 는 명	소 또 주	속 는 소	성 별	성 명		

(포상대장은 표창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.)

수여증명서 신청서(개인표창)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기간 7일
신청인	성명		생년월일
	주소		전화번호
	수훈자와의 관계(본인, 유족, 대리인)		
수훈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
	수훈 당시 소속		군번(수훈 당시 군인의 경우)
용 도			

「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」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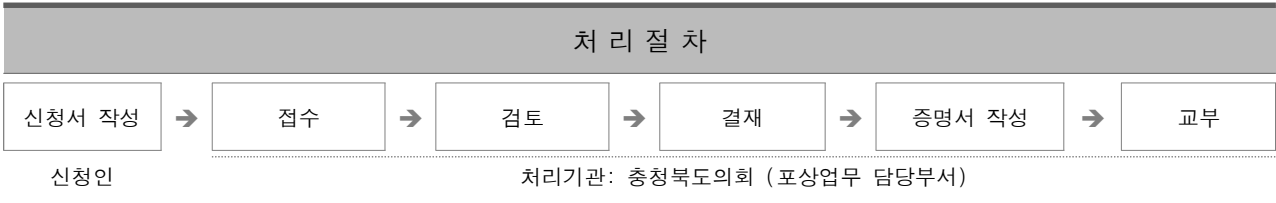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년 월 일

(서명 또는 인)

충청북도의회의장 귀하

첨부서류	- 본인: 신분증 사본 1부 - 대리인: 위임장 1부, 정부 표창을 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 1부,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



수여증명서 신청서(단체표창)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기간 7일
신청인	성명		생년월일
	주소		전화번호
	수훈자와의 관계(대표자, 대리인)		
수훈자 (단체명)			
용도			

「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」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여증명서를 신청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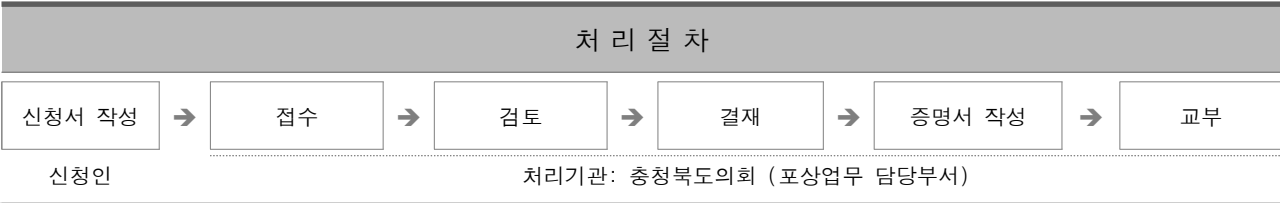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년월일

(서명 또는 인)

충청북도의회의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- 대표자: 신분증 사본 1부, 단체 고유번호증 1부, - 대리인: 위임장 1부, 정부 표창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,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, 단체 고유번호증 1부,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	---	--------



제 호

포상 수여증명서(개인)

성 명

- 소 속 :
- 직 급 또는 계 급 :
- 생년월일 또는 군번 :
- 포 상 종 류 :
- 상 훈 번 호 :
- 수 여 일 :
- 공 적 요 지 :

「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」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
포상을 수여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충청북도의회의장

제 호

표창 수여증명서(단체)

단 체 명

- 포 상 종 류 :
- 상 훈 기 록 번 호 :
- 수 여 일 :
- 공 적 요 지 :

「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」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
포상을 수여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충청북도의회의장

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공무원법

제79조(표창)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.

□ 상훈법

제8조(서훈의 취소 등)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,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.

1.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
2.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(敵對地域)으로 도피한 경우
3.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고, 훈장 또는 포장 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□ 정부 표창¹⁾ 규정

제19조(표창의 취소) 제18조에 따라 표창의 취소를 요청받은 표창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, 시상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시상을 취소한다.

제20조(표창 취소의 공표) 표창 추천권자는 제19조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표창이 취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.

1) 해당 규정에서의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인 ‘포상’과 성적에 대한 표창인 ‘시상’으로 구분됨.